



대학평의원회 회의록(04)

일 시 : 2023년 1월 4일(수) 10시30분
장 소 :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
위 원 : 정광호(위원장), 신동석(서기), 김가석, 김현영, 남익정, 류재권, 박성희, 박일호, 서경현, 서형덕, 임종성, 최성숙, 황윤정
첫 기 도 : 묵상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1. 개회

의장이 교수대표(3명), 직원대표(1명), 학생대표(1명) 등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개최 성원이 됨에 따라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의 장 : 금일에 회의 안건을 간략히 설명함

- 안건 01. 직전회의록 승인
- 안건 02.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안건 03. 2022학년도 예산 전용(안) 자문
- 안건 04. 2023학년도 등록금(안) 자문
- 안건 05. 2023학년도 예산(안) 자문
- 안건 06. 학칙 개정 심의
- 안건 0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임명

2. 직전회의록 승인

의 장 : 직전회의록에 대한 승인 제안을 요청함.

서 기 : 직전회의록 승인을 제안하며 반기로 동의함.

의 장 : 재청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4 : 재청함.

서 기 : 직전회의록 결의사항에 대해 설명함.

의 장 : 설명에 대한 질문을 위원들에게 요청함.

위 원 들 : (질문없음)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위 원 들 : 승인함.

3. 2022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학년도 예산 전용(안), 2023학년도 등록금(안), 2023학년도 예산(안) 자문

의 장 : 서기에게 안건의 성격에 따라 2번부터 5번안건에 대해 안건 제안을 요청함

서 기 : 2022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학년도 예산 전용(안), 2023학년도 등록금(안), 2023학년도 예산(안) 자문을 제안하며 받기로 동의함.

의 장 : 재정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2 : 재청함.

의 장 : 2022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학년도 예산 전용(안), 2023학년도 등록금(안), 2023학년도 예산(안) 설명을 요청함.

- 2022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예산팀장 : 2022학년도 교비회계 추경 자금예산서 관련하여 교비회계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 약 *,***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억 증가함을 포함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함.

- 2022학년도 예산 전용(안) 설명

예산팀장 : 2022학년도 교내장학금 등으로 인한 예산 전용 진행되었음. 예비비의 경우 등록금 회계 *억원이 전용되었고, 비등록금 회계 *천만원이 전용됨을 설명함.

- 2023학년도 등록금(안) 설명

예산팀장 : 2023학년도부터 학부 입학금이 최종폐지 됨에 따라 감축 후 잔액인 **만원이 입학 실비용으로 인정됨. 이에 입학금 폐지 최종합의에 따라 실비용 **만원을 2023학년도 수업료에 산입하여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함. 또한 대학원 **학과 개설로 인해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등록금을 석사 *백만원, 박사 *백*십만원, 석박사 통합과정은 1~3학기 석사등록금, 4~8학기 박사등록금으로 책정하였음을 설명함.

- 2023학년도 예산(안) 설명

예산팀장 : 2023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관련하여 교비회계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 약 *,***억원으로 2022학년도 추경예산대비 약 ***억원 감소함을 포함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함.

의 장 : 설명에 대한 질문을 위원들에게 요청함.

위 원 1 :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차기 이월금의 규모와 기준에 대해 질문함.

예산팀장 : 차기 이월금의 경우 등록금회계는 약*천만원, 비등록금 회계는 약***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등록금 회계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총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음을 설명함.

위 원 2 : 토지보상비용으로 인한 2022학년도 예산편성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함.

예산팀장 : 2022학년도 토지보상으로 교내 환경개선을 진행 중이며, 서버 가상화, 대강당 리모델링, 도서관 리모델링, 바울관 리모델링 등에 대해 설명함.

위 원 3 : 비등록금 회계 차기 이월금에 대해 질의함.

예산팀장 : 비등록금 회계 차기 이월금 제한이 없으며, 2022학년도 비등록금 회계 토지보상금에 대해 이월하였음을 설명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자문 승인을 요청함.

위 원 들 : 승인함.

4. 학칙 개정 심의

의 장 : 학칙 개정 심의를 제안을 요청함.

서 기 : 학칙 개정 심의를 제안하고 반기로 동의함.

의 장 : 재청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3 : 재청함.

의 장 : 학칙 개정 설명을 요청함.

교무부처장: *교무부처장의 설명을 아래 신규대조표로 대신함

-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2)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6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2년)으로 한다. 4. 전 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충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삭제>	제16조 제목 수정 ①항 1호~3호 일부 삭제 4~5호 전체 삭제 ②항 전체 수정 ③항 전체 삭제
제35조 (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칙에 명시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제35조 (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5.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제35조 ②항 4호 전체 삭제 5호 일부 삭제
제56조 (졸업)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이수 표 참조). ②~④ 생략	제56조 (졸업)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이수 표 참조). ②~④ 현행과 같음	제56조 ①항 내용 삭제 및 추가
제79조 신설 제8장 신설	제8장 자체평가 제79조 (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신설 제79조 신설
부칙	부칙	학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16조, 제35조, 제56조는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	---	-------

-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2)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학사경고 제8조 (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①~③ 생략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는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13.] 제9조 (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31기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생략 ②~⑩ 생략	제3장 학사경고 제8조 (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①~③ 생략 ④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13.] 제9조 (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현행과 같음 ②~⑩ 현행과 같음	제3장 제8조 ④항 내용 일부 삭제 제3장 제9조 ①항 1호 자구 수정
제4장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제2조 (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2.23., 2010.12.17.] ①~③ 생략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재학 연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⑦ 생략	제4장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제2조 (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44조)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2.23., 2010.12.17.]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⑤~⑦ 현행과 같음	제4장 제2조 ④항 내용 일부 삭제
제7장 졸업요건 제1조 (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평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2.23., 2009.11.23., 2014.12.23., 2017.2.27., 2021.1.22.] ②~⑦ 생략 제6조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 [개정: 2019.3.25.] ① 생략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재학 연한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⑦ 생략	제7장 졸업요건 제1조 (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2.23., 2009.11.23., 2014.12.23., 2017.2.27., 2021.1.22.] ②~⑦ 현행과 같음 제6조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본조신설: 2017.2.27.] [개정: 2019.3.25.]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제7장 제1조 ①항 내용 일부 삭제 제6조 ②항 내용 일부 삭제
부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8조, 제4장 제2조, 제7장 제1조는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학칙시행세칙 부칙 개정

의 장 : 설명에 대한 질문을 위원들에게 요청함.

위 원 들 : (질문 없음)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승인함.

위 원 들 : 승인함.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임명

의 장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임명 안건 제안을 요청함.

서 기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임명 안건을 제안하며 반기로 동의함.

의 장 : 재청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1 : 재청함.

의 장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임명 설명을 요청함.

서 기 : **학과 김**교수, **팀 박**부장이 2022년 2월 10일 임명되어 2022학년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설명함

의 장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을 요청함.

위 원 1 : 현재 2022학년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학교와 법인의 사정을 구성원들 중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연임을 제안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면 위원1의 제안에 따라 **학과 김**교수와 **팀 **부장의 연임에 대한 제안의 승인을 요청함.

위 원 들 : 승인함.

6. 회의 종료

의 장 :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종료를 선언함.

끝 기 도 : 묵상

위 원 김 기 석 _____

위 원 김 현 영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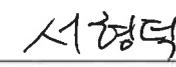
위 원 남 의 정 _____

위 원 류 재 권 _____

위 원 박 성 희  _____

위 원 박 일 호 _____

위 원 서 경 현  _____

위 원 서 형 덕  _____

위 원 신 동 석  _____

위 원 임 종 성  _____

위 원 정 광 호  _____

위 원 최 성 숙 _____

위 원 황 윤 정  _____